

해사안전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6. 4] [해양수산부령 제413호, 2020. 6. 4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 및 그 하위법령이 제정(2020. 6. 4. 시행)되어 「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이 폐지됨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·작업의 허가 절차, 음주측정의 세부절차 등 해당 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「해사안전법」의 위임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,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선박위치정보 기록 장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해양수산부 제공>

개정문

○ 해양수산부령 제413호

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6월 4일

해양수산부장관 (인)

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(작업)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1.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
2.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(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)
3. 공작물의 설계도면(평면도·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)

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(작업)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항로표지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·관리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로표지의 설치
2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
3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고시하는 업무

제9조의2(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)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제29조 중 「선박안전법」 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"를 "다음 각 호의 장치"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선박안전법」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항해자료기록 장치
2. 「선박안전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
3. 「어선법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

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음주측정 세부절차)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신원 확인
2.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04조의2제3항 또는 제107조제2호의4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

제31조의3(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) ①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의 검정 또는 교정을 해야 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·관리해야 한다.

별표 7 제1호 비고란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) 해상교통조사장비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.

별표 8의 제목 중 "제19조"를 "제9조의2, 제19조"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라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"다음 각 목"을 "다음"으로 하며, 같은 부분 후단 중 "등록취소"를 "허가취소, 등록취소"로, "법 제23조제1항제1호"를 "법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4호, 제23조제1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목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) 해당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
가.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13조 제3항제1호	허가취소			
2)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며 이를 계속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법 제13조 제3항제2호	경고	허가취소		
3) 허가를 할 때 불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3조 제3항제3호	경고	업무(전부 또는 일부) 정지 3개월	업무(전부 또는 일부) 정지 6개월	허가취소
4)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	법 제13조 제3항제4호	허가취소			

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교통

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(작업)허가서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공사(작업)허가서로 본다.

제3조(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「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.

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공사(작업)허가 신청서

*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5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:)	
공사(작업) 내용	목적	
	종류	
	방법	
	기간	
	장소	
	비고	

「해사안전법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(작업)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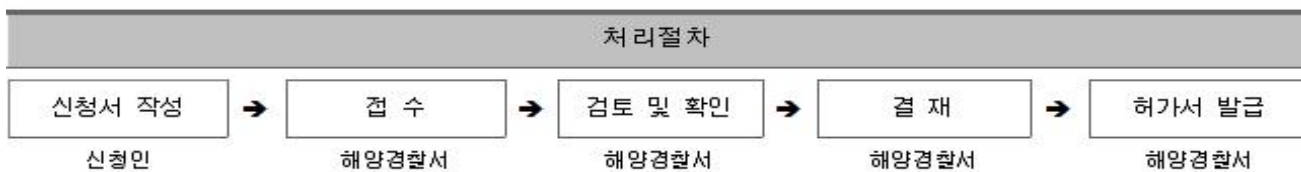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해양경찰서장

귀하

첨부서류	1.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2.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(5만분의 1 이상 축적의 해도를 말합니다) 1부 3. 공작물의 설계도면(평면도·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

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공사(작업)허가서

시행자	
목적	
종류	
방법	
기간	
장소	
조건	

「해사안전법」 제 13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해양경찰서장 직인

귀하

